

February 28, 2020

Legal Update

국토교통부, 자율주행자동차법 하위법령 입법예고

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·시범운행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자율주행자동차법’)이 2020. 5. 1. 시행될 예정인데,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20.2.10. 입법예고되었습니다.

위 입법예고의 주요한 내용은 ① 자율주행 용이성에 따라 도로를 등급화하는 ‘안전구간’의 지정 기준 절차 설정, ②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절차 기간 변경 해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, ③ 시범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 구체화, ④ 시범운행지구 운영 평가 방식 설정, ⑤ 보험가입의무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입니다. 위임법령 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※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.3.11.(시행규칙은 2020.3.23.) 까지 국토교통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이후 법제처 심사(’20.3월), 차관회의·국무회의(’20.4월)를 거쳐 공포·시행(’20.5.1.)될 예정입니다.

1.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

- (시범운행지구의 지정)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시·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규제특례의 구체적 내용, 안전성 확보 방안, 이해관계자 간 갈등조정 과정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함
- (시범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 ①)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를 적용 받으려는 자는 계획서와 인적·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증서(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및 공탁 등 인적·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), 운행하려는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
- (시범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 ②)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노선을 운행하는 한정운수면허는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, 시외버스운송사업,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, 마을버스운송사업으로 함
- (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)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·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서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 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하도록 함
- (보험가입의무)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을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1억5천만원, 부상 시 3천만원,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 시 사고당 10억원 등으로 하고,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
- (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) 익명처리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배제함

2.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

- (자율주행협력시스템 및 정밀도로지도의 개념) 자율협력주행시스템과 정밀도로지도의 정의를 각각이 갖추어야 할 세부적인 기능적 요소에 따라 구체화
 - (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) 현황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, 현황조사 결과를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관리·분석하도록 함
 - (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) 도로구조 및 도로요건, 정밀도로지도의 구축·갱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도록 하고,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함
 - (시범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 ①)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를 적용 받으려는 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동차등록증 등*을 제출하여야 하며,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과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등을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
- ※자동차등록증, 임시운행허가증, 본 법에 따른 안전기준 특례승인서 중 하나
- (시범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 ②)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·관리의 유형은 가로등 및 신호기의 설치·보수와 도로표지 및 노면표시의 설치·보수,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석 등의 설치·보수, 도로표면의 포장,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설치·보수로 함

법무법인 세종의 자동차·모빌리티팀은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자동차 시장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자동차의 출시를 비롯하여 전통적인 자동차 관련 규제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규제대응, 정책 및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△배출가스 등 환경 규제 △안전기준 위반, 리콜 등 안전 규제 △전파 인증, 관세 등 규제 △자동차, 전동킥보드 등 모빌리티 공유 관련 규제 △자동차 환경 규제 및 안전 규제 관련 행정, 형사 소송 △자동차 결함 관련 각종 민사소송 △담합 등 공정위 조사 관련 대응 △하도급, 광고 등 관련 자문 △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자문 △자율주행 기술 관련 라이선스 계약 및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자문 △자율주행 차량 수입 관련 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Contacts



이용우
파트너변호사

☎ 02-316-4007

✉ ywlee@shinkim.com



강신욱
파트너변호사

☎ 02-316-4059

✉ sokang@shinkim.com



황정현
소속변호사

☎ 02-316-1775

✉ jhhwang@shinkim.com

SHIN & KIM

법무법인(유) 세종

법무법인(유)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,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.

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& Kim LLC'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.